

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: '90. 10. 24
- 제안자 성명 : 윤 태 봉 의원
- 회부일자 : '90. 10. 24
- 개최 회수 및 일수 : 5회 6일 ('91. 10. 24 - '91. 10. 29)
- 관계공무원 출석 현황 :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국장, 건설국장 외 4명
- 건축 안전 진단기관 진단책임자 : 대한건축사협회 편 기 범
- 청원인 대표 : 재건축 추진위원회 총무 박 병 옥 외 3명

2. 제안설명요지

영등포구 양평동 2가 40-1 소재 포푸라 연립주택 204세대는 상습침수지역에다 불량시공으로 준공당시 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침수로 인한 지반이 약해져 있고 최근 서부 간선도로 개통으로 소음진동이 극심하여 도괴 위험 및 누수, 침수, 감전사고 우려 등 거소의 장소로 심히 부적합하여 재건축을 청원하게 됨.

3. 심사보고 요지

- 매립지역으로 지반 침하가 계속되어 도괴 위험 상존
- 인접 서부 간선도로의 극심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진동으로 골조 및 방수층의 심한 크랙 (crack)이 발생하여 도괴 위험
- 건물 노후 및 불량사태가 전면 보수 비용보다 재 건축비용이 저렴함.
- 건물현황이 연탄가스, 전기감전, 화재위험, 벽돌칸막이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가 요망됨.
- '90년도 수해, 87년도 이전까지 상습침수지역으로 청원지역도 향후 침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,
- '90. 6. 15 대한건축사협회의 건물안전진단 감정결과 개축 또는 재건축이 요망된다는 결론은 타당성 있음.
-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1호에 해당되어 재건축이 타당함.

4. 심사결과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.

5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6. 의결방법 : 만장일치